

윤리규범규정

개정번호 : Version 2.0

제.개정이력

개정일자	버전	개정 내역	작성자
2022.08.29	1.0	신규 제정	인사총무팀
2022.08.29	2.0	사명변경 적용	인사총무팀

승인 내역

이름	직급	직함	서명	서명 일자

목 차

제1장 총 칙

- 제1조 (목 적)
- 제2조 (적용범위)
-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제4조 (고객존중)
- 제5조 (고객만족)
- 제6조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

제3장 협력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 제7조 (평등한 기회)
- 제8조 (비윤리적 행위금지)
- 제9조 (상호발전)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10조 (기본윤리)
- 제11조 (사명의 완수)
- 제12조 (자기계발)
- 제13조 (공정한 직무수행)
- 제14조 (상호존중)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 제15조 (인간존중)
- 제16조 (공정한 대우)
- 제17조 (인재의 육성)

제6장 국가사회에 대한 책임

- 제18조 (건전한 기업활동)
- 제19조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
- 제20조 (환경의 보호)

제7장 부 칙

- 제21조 (시행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범은 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리얼즈(이하 '회사'라 함)의 임직원이 올바른 기업윤리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모든 경영활동에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윤리경영을 통하여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주주 모두가 만족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고와 행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범은 회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금품 :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향응·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편의 : 금품, 향응, 접대를 제외한 교통, 숙박,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을 말하며,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 외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 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행하고, 상호부담 없음이 사회통습상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범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금액으로 환산하여 1회 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로 본다.
5. 신고자: 금품, 향응, 접대 및 편의 등을 수취하였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
6. 이해관계자: 회사 및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개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7. 고발 및 제보자: 비윤리적인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제보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8. 협력사: 당사와 매입/매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신규 거래선에 등록하고자 하는 외부업체를 말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4조 (고객존중)

1.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행동과 판단기준을 고객의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2. 고객의 명예와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고객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고객만족)

1.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
2.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의 불만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제6조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

1. 고객에게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정확한 정보의 공개 및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항상 창조하여 제공한다.

제3장 협력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7조 (평등한 기회)

1.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사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2. 거래선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으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제8조 (비윤리적 행위금지)

1. 협력사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1) 기존협력사와의 거래 단절 시 해당협력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 2)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한다.
2. 협력사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3. 임직원은 협력사에게 자신의 기념일이나 경조사를 공식 또는 우회적 방법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4. 협력사에게 리베이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를 통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협력사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연처리 하거나 인사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6. 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휴가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7. 임직원은 협력사와 같이 차나 식사를 할 경우 반드시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도록 한다.
8. 협력사가 당사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공문발송, 거래지연 혹은 거래중단 등의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다.

제9조 (상호발전)

1. 협력사와 상호신뢰 정신으로 사업 파트너의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
2.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합법적 지원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3.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제10조 (기본윤리)**

1. 임직원은 회사의 인원으로서는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인원으로서는 금지와 자긍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3.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제11조 (사명의 완수)

1.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관을 공감하고 기업문화에 적극 호응하며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3.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4.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5. 회사의 재산을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제12조 (자기계발)

1.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자기계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자질과 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2. 회사는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적극권장하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역량향상을 적극 지원한다.

제13조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현행 법률과 사회통념에서 벗어나지 않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3. 임직원 상호간에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현행 법률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임직원 상호간 금전거래 및 대출보증, 연대보증 행위를 금지한다.
6. 직장 내 성희롱을 철저히 방지하며 이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임직원은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1) 직원 상호간 성적 유혹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 2) 사내에서 음란사이트 접속을 금하며 CD, 도서, 사진, 그림, E-mail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보는 행위를 금한다.

제14조 (상호존중)

1.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절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5조 (인간존중)

1.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갖고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6조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를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17조 (인재의 육성)

1.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상사는 부하를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해야 한다.

제6장 국가사회에 대한 책임

제18조 (건전한 기업활동)

1.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수행한다.
2.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3.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 등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한다.

- 4.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한다.
- 5.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인다.

제19조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

- 1.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 2.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3.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4.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기부금 등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20조 (환경의 보호)

- 1.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 2.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3.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 4.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환경친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7장 부칙

제2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2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